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8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고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2.12.29.)에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45호('22.12.30.)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동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은평구	산새마을	신사동 237일대	49,822	·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신규)로 선정된 신사동 237 번지 일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				54,630	

구분	자치구	명 칭(가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은평구	편백마을	신사동 200일대	61,946	· 주택재개발사업 2차 후보지(신규)로 선정된 신사동 200 번지 일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				62,270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 산새마을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고
기정	2022. 01. 28.(기존구역)	49,822	· 기정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이 없으나,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3. 11. 09.(확대구역)	4,808	

◦ 편백마을

구분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비고
기정	2022. 01. 28.(기존구역)	61,946	· 기정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 변경이 없으나, 추가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변경	2023. 11. 09.(확대구역)	324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9) 또는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